□ 법계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 (전형방법) ① 대종사와 종사 법계는 특별전형으로 한다.	제8조 (전형방법) ① **대종사 법계는 이 법 제9조 및 제12조의3의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 품수한다. 다만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승려는 자동품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다.**
〈신설〉	**② 종사 법계는 특별전형으로 한다.**
② 종덕·대덕·중덕·견덕 법계는 고시전형으로 한다.	③ 종덕·대덕·중덕·견덕 법계는 고시전형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④ 비구니법계의 전형 또한 비구 전형에 준한다.	⑤ 비구니법계의 전형 또한 비구 전형에 준한다.
제12조 (특별전형) ① 대종사 특별전형은 법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년 2회(상반기, 하반기) 심사하여 선정하고, 중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특별전형) ① **〈삭제〉**
② 종사 특별전형은 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종사 특별전형은 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삭제	③ 삭제
제12조의3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재직한 경력 2. 원로의원, 법계위원, 계단위원을 재직한 경력 3.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을 재직한 경력 4. 교구본사 주지를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5.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제12조의3 (**대종사 법계 자동품수 자격**) 대종사 법계 **자동품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1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6. 중앙종회의원을 6년 이상 재직한 경력 7. 초심호계원장 3년 이상, 호계위원을 6년 이상 재직한 경력 8. 종법에 의해 구성된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3년 이상, 위원을 6년 이상 재직한 경력 9. 중덕 법계를 수지한 후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15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 10. 교육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11.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 12. 말사주지를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13. 중덕 법계를 수지한 후 본말사에서 10년 이상 염불, 주력 등의 수행을 한 경력 14.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15. 문화·인권·노동·복지·환경·평화 등 대사회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 경력 16. 위 4~14호의 이력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종사	
제14조 (품서의식) ① 위원장은 법계를 품서할 때 법계산림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법계품수자에게는 법계증서와 가사를 교부한다. ③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품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품서의식) ① 위원장은 법계를 품서할 때 법계산림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법계품수자에게는 법계증서와 가사를 교부한다. ③ **〈삭제〉**
〈신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